

인천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3가단21551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C

피 고 D

변 론 종 결 2024. 4. 19.

판 결 선 고 2024. 5. 24.

주 문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E 사이에 2022. 10. 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E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3. 1. 17. 접수 제1680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07. 12.경 원고가 취급하는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2010. 7.경부터 신용카드이용대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E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가소34005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11. 2. 22. ‘E은 원고에게 4,997,360원 및 그중 4,603,639원에 대하여 2011.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1. 3. 17. 확정되었다(이하 위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원고의 E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F은 2022. 10. 6. 사망하였고(이하 F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자녀인 E, 피고, G, H, I이 망인의 재산을 각 1/5 비율로 상속하였다.

다. E, 피고, G, H, I은 2023. 1. 13.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가 소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23. 1. 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3. 1. 17. 접수 제16807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E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5 지분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취지의 이 사건 협의를 하였고,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협의의 취소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피고의 자금으로 매수하여 망인이 거주하도록 하면서 망인에게 명의를

신탁한 피고 소유 부동산이고 망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는 E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협의를 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E에 대하여 이 사건 협의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는 이 사건 협의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이 사건 부동산이 망인의 상속재산인지 여부

가)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며,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8다26306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또는 피고의 남편 J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②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부담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련된 대출금을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자녀로서 망인에게 경제적 도움을 준 것이거나, 망인과의 다른 법률관계에 기인하여 급부를 제공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충분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소유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의 상속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인정 여부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17937 판결 등 참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은 이 사건 협의 당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1/5 지분 이외에는 적극재산이 없었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약 1,7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협의는 E의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사해행위이고, E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추측에 불과한 사정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다36296 판결 등 참조).
- 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E은 장기간 소액의 신용카드이용대금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E의 동생으로서 E의 경제적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 -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결국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E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3. 1. 17. 접수 제1680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지원

별지